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490
----------	-----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 평창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 나.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조제3호)
- 다. 띄어쓰기 등 자구 정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9. 29. ~ 2025. 10. 13.(15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진흥법」 제45조”를 “「관광진흥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군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 6. (생략) <p><신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 3. ----- 「관광진흥법」 제45조----- -----. 4. ~ 6. (현행과 같음)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군에 <u>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u>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p><신설></p>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u>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u>

2. (생략)

제10조(보조금)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보조금) ① ----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연락처	033-330-2250